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무단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560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27.

(3) 회 부 일 : 2025. 2.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양도·대여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이로 인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양도·대여라는 유사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단속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지·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 ⑤ (생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u>제4항</u> 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 ----- ---- <u>제5항</u> ----- ----- -----.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u>제3항</u> 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⑧ ----- ----- -- <u>제4항</u> -----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과태료) <신 설>

① (생 략)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
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
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
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항-----

-----.

제27조(과태료) ①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
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
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7조제6항-----

-----.

④ 제17조제5항-----

-----.

1. 2.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의4] 및 제13조, [별표 3]에서는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과 재발급 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참고자료 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관련 조문).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과태료)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적발 건수와 과태료 부과 금액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로,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 사유(2024년 기준)는 불법주차(96%), 주차 방해(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 사용(1.8%) 순으로 조사되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과태료 부과(건)	370,350	403,368	443,389	434,665
부과금액	약 344억 9,800만원	약 400억 3,600만원	약 495억 3,700만원	약 501억 2,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 과태료 부과 유형(2024년) >

구분	불법주차	주차 방해	부당사용	계
과태료 부과(건)	417,338 (96%)	9,430 (2.2%)	7,897 (1.8%)	434,665
부과금액	약 358억 5,200만원	약 30억 5,500만원	약 112억 1,400만원	약 501억 2,100만원

주1):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과태료: 5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참고로,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당 사용에 관해서는 과태료 부과 없이 ‘회수 또는 재발급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는 경우에 병기하는 방식으로 발급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자료: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 II 권, 재구성.

실무상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도 위주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할 때에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의 근거 법률인 「장애인등편의법」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규정함으로써, 제재 규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규정 변화 >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복지법」
현행	회수 또는 재발급 제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포함) 부당한 사용 등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이하
↓	↓	↓
개정안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금지 규정 명시 - 회수 또는 재발급 제한 -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 다만,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에서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행법과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로

‘양도·대여’, ‘대여하거나 양도’,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각각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현행법 및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제 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③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u>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u>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u>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u> 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 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u>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u>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u>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u> 하거

	1. 발급받은 <u>장애인전용주 차구역 주차표지</u> 를 <u>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한 경우</u>	나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
--	---	-----------------------------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 법령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무단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차표지 무단 사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관련 조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별표 2의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발급 제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재발급 제한 기간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날 또는 회수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그 처분 후의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1호	6개월	1년	2년
나.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2호	경고	6개월	1년
다.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3호	6개월	1년	2년
라.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4호	6개월	1년	2년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제1호	10만원
사.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제2호	10만원
아.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50만원